

2024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검 토 보 고 서

I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제1950호, 「**2024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**」은 '24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

II.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

1. 제안이유

- 2023년도 기금결산에 따른 실제 예치금 회수 금액과 이월금을 반영하고, 공정률 상승에 따라 건립 공사 축진을 위한 2024년도 시설비 지출계획 증액과 이월금 집행을 반영하여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(2023년도 말 조성액) 총 46,692,524천원 증가

- 2023년도 기금결산에 따른 실제 예치금 회수 금액과 이월금 반영

(단위: 백만원)

기정(A)	변경 내역(B)			증감 (C=B-A)
	실제 예치금 회수 금액 ①	이월금 ②	소계 (③=①+②)	
93,468	133,463	6,697	140,160	46,692

나. (지출계획) 총 31,498,782천원 증가

- 공정률 상승에 따라 건립 공사 축진을 위한 2024년도 시설비(공사비 및 관급자재) 지출계획 증액과 이월금 집행 반영

(단위: 백만원)

기정(A)	변경 내역(B)			변경 후 지출계획 (C=A+B)
	시설비 증액 ①	이월금 ②	소계 (③=①+②)	
41,799	24,801	6,697	31,498	73,298

다. 수입·지출계획 변경내용

(단위 : 백만원, %)

수입					지출				
항목	변경 (A)	경기 (B)	증감 (C=A-B)	증감율 (D=C/B)	항목	변경 (A)	경기 (B)	증감 (C=A-B)	증감율 (D=C/B)
합계	135,417	95,422	39,995		합계	135,417	95,422	39,995	41.9
예치금회수	133,463	93,468	39,995		비용자성사업비	66,601	41,799	24,801	59.3
이자수입	1,953	1,953	-		예치금	68,816	53,622	15,193	28.3

Ⅲ. 검토내용

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 '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(954억 2,200만원) 보다 399억 9,500만원을 증액하여 운용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
 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중 **수입계획**은 '23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**예치금회수** 항목을 당초 계획(934억 6,800만원) 보다 399억 9,500만원 증액된 1,334억 6,300만원으로 수입계획함에 따라 **지출계획**도 이와 연동하여 399억 9,500만원을 증액하여 지출계획하고자 하는 것임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(이하 '지방기금법')¹⁾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,
 - **지출계획**은 정책사업인 **기관운영**의 경우, 공정률 상승에 따라 시설비를 당초 계획(417억 9,900만원) 보다 59.3%, 248억 100만원 증액하고, 다른 정책사업인 **재무활동**의 지출계획도 당초 계획(536억 2,200만원) 보다 28.3%, 151억 9,300만원 증액하여 지출계획함에 따라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
 - 동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은 결산결과 발생한 여유자금을 예치금으로 적립하고, 시설비를 추가 편성하고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요청한 것으로 동 기금의 설치근거인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·운용 조례」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²⁾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

1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이하 생략)

2)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·운용 조례」 제4조(기금의 용도)

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.

1.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
2. 설계비 및 감리비
3. 그 밖에 부대시설비 등 건립에 필요한 경비

〈표 3-1〉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기금 수입계획 세부 변경내역

(단위: 백만원, %)

장	관	항	목	당 초 (A)	변 경 (B)	증 감 (C=B-A)	증 감 륜 (D=C/A)
합 계				95,422	135,417	39,995	41.9
자 체 수 입				1,953	1,953	-	-
	이 자 수 입			1,953	1,953	-	-
		이 자 수 입		1,953	1,953	-	-
		예 금 이 자 수 입		1,953	1,953	-	-
기 타				93,468	133,463	39,995	42.8
	예 치 금 회 수			93,468	133,463	39,995	42.8
		예 치 금 회 수		93,468	133,463	39,995	42.8
		예 치 금 회 수		93,468	133,463	39,995	42.8

〈표 3-2〉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기금 지출계획 세부 변경내역

(단위: 백만원, %)

정 책	단 위	세 부	사업내역	당 초 (A)	변 경 (B)	증 감 (C=B-A)	증 감 륜 (D=C/A)			
합 계				95,422	135,417	39,995	41.9			
①	기 관 운 영			41,799	66,601	24,801	59.3			
		교 육 행 정 기 관 시 설		41,799	66,601	24,801	59.3			
			기 관 시 설 유 지 관 리		41,799	66,601	24,801	59.3		
				신 청 사 건 립		41,799	66,601	24,801	59.3	
					설 계 비		-	-	-	-
					시 설 비		39,861	64,663	24,801	62.2
					감 리 비		1,770	1,770	-	-
					시 설 부 대 비		168	168	-	-
					②	재 무 활 동			53,622	68,816
	예 치 금		53,622	68,816	15,193	28.3				
		예 치 금		53,622	68,816	15,193	28.3			

○ 「지방기금법」과 교육부의 「교육비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³⁾은 “정책사업 지출금액”을 변경하려는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어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을 정책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

- 동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은 **기관운영**, **재무활동**이나,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법으로 정하고 있는 “정책사업”을 배제한 채 **비용자성사업비**, **예치금**으로 임의로 구분하여 제출한 바,
- 이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적한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,⁴⁾ 부정확한 정책사업을 개선하지 않고 기재함으로써 의회의 의안심사에 대한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중요사항 파악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시의회에 제출한 동 안건은 법규에 따라 작성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임

〈표 3-3〉 기금운용계획변경안중 지출계획 항목 수정 내역

(단위 : 백만원, %)

(단위 : 백만원, %)

지	출	계	획
항 목	변 (A)	경 기 (B)	정 증 감 증 감 율 (C=A-B) (D=C/B)
합 계	135,417	95,422	39,995 41.9
비용자성 사 업 비	66,601	41,799	24,801 59.3
예 치 금	68,816	53,622	15,193 28.3



지	출	계	획
항 목	변 (A)	경 기 (B)	정 증 감 증 감 율 (C=A-B) (D=C/B)
정책사업			
합 계	135,417	95,422	39,995 41.9
기관운영	66,601	41,799	24,801 59.3
재무활동	68,816	53,622	15,193 28.3

3) 교육부, 「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(’23. 8.), p.189

4) ①예산결산특별위원회, (’21. 9. 2) 「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」, p.6
②예산결산특별위원회, (’22. 8.29) 「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」, p.7